

# < 2022년 FTA특례법령 개정사항 교재순 >

구민회 관제사

## ★ 개정된 법률 총정리 - 교재순 (기존 교재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

###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단, 개정의 중요도이지 내용의 중요도는 아님.

###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 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교재 23페이지 ★ - 변경

✓ 상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납치류(영 별표 7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 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납치류로 한정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납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 0303391000호 및 제0303399000호의 납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및 제0303699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15 품목번호 제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030344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

## ● 교재 31페이지 ★★★ - 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신설)

### (3) 경정한 물품의 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자(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경정) 또는 제39조제2항(추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3)-1 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

수입자는 상기(2) 또는 (3)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계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2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

세관장은 (3)-1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제출서류

현행과 같음

### (5) 경정청구

- ①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 교재 50페이지 ★ - 삭제

### 4) 페루와의 협정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 ● 교재 51페이지 ★★ - 변경

### <변경 전>

#### (3) 아세안회원국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캄보디아 상무부
  -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인도네시아 통상부
  -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라오스 상공회의소
  -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미얀마 상무부
  -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필리핀 세관
  -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세관
  -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태국 상무부
  -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 <변경 후> - 아래를 제외한 것은 현행과 같음.

-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 ● 교재 54페이지 ★★ - 신설(승격)

### <변경 전>

#### 4) 원산지소명서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변경 후>

- 4) 원산지소명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 교재 56페이지 ★★ - 변경

### <변경 전>

#### (9) 신청서류

상기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재발급의 경우 : 재발급 신청사유서
- ② 정정발급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 ㉠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 ㉡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 ㉢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0) 전자문서 방식 - 현행과 같음

#### (11)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재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변경 후>

#### (9) 신청서류

상기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① 재발급의 경우 : 재발급 신청사유서
- ② 정정발급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 ㉠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 ㉢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1)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재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교재 57~58페이지 ★ - 변경

### <변경 전>

#### (2)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 ① 의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재료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변경 후>

#### (2) 국내제조확인서

##### ① 의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교재 63페이지 ★★ - 신설

### 2) 인증신청서류

1)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 및 ④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① 신청서
- ②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1)의 ①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교재 64페이지 ★ - 정리

### <변경 전>

#### 11) 즉시 인증취소사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기 1) ②④⑤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 후>

#### 11) 즉시 인증취소사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 ③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한 경우

## ● 교재 65페이지 ★ - 신설

### 2) 인증신청서류

1)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 및 ④의 서류를 대신해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교재 68~69페이지 ★ - 변경

### <변경 전>

## 2. 수입물품 원산지오류 수정신고

### (1) 세액에 부족분이 있을 때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세액의 과다분이 있을 때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변경 후>

### (1) 세액에 부족분이 있을 때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세액의 과다분이 있을 때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 교재 90~91페이지 ★ - 변경

### <변경 전>

- ◆ 상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및 **중국과의 협정** 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변경 후>

#### 6. 조사결과 서면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 ◆ 상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 교재 157페이지 ★ - 정리

### <변경 전>

#### 2. 상호협력

##### (1) 의의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 (2) 상호협력사항

상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 ③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④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교환
- ⑥ 그 밖에 관세협이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 <변경 후>

#### 2. 상호협력

##### (1) 의의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 ① 통관 절차의 간소화
- ②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 ③ 세관기술의 지원
- ④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 ⑤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 ③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 ④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교환
- ⑥ 그 밖에 관세협이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 ● 교재 172페이지 ★★ - 신설

### ✓ 계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시행규칙 제37조)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7. 터키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8.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2.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3. 영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① 1. 4.부터 8.까지 및 10.부터 1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 교재 189페이지 ★ - 삭제

05 권한의 위임 (법 제42조)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31조에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익제거의 처리.
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삭제**

● 교재 194페이지 ★ - 변경

<변경 전>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변경 전>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